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수 확대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85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수 확대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6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안자: 임호선 의원 등 10인
2. 제안일: 2025. 12. 24.
3. 회부일: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협 등에서 회원을 위한 상호금융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상호금융사업 등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Ⅲ. 검토의견

1.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수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재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이하 “중앙회”)의 준법감시인 수를 5명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27조의4).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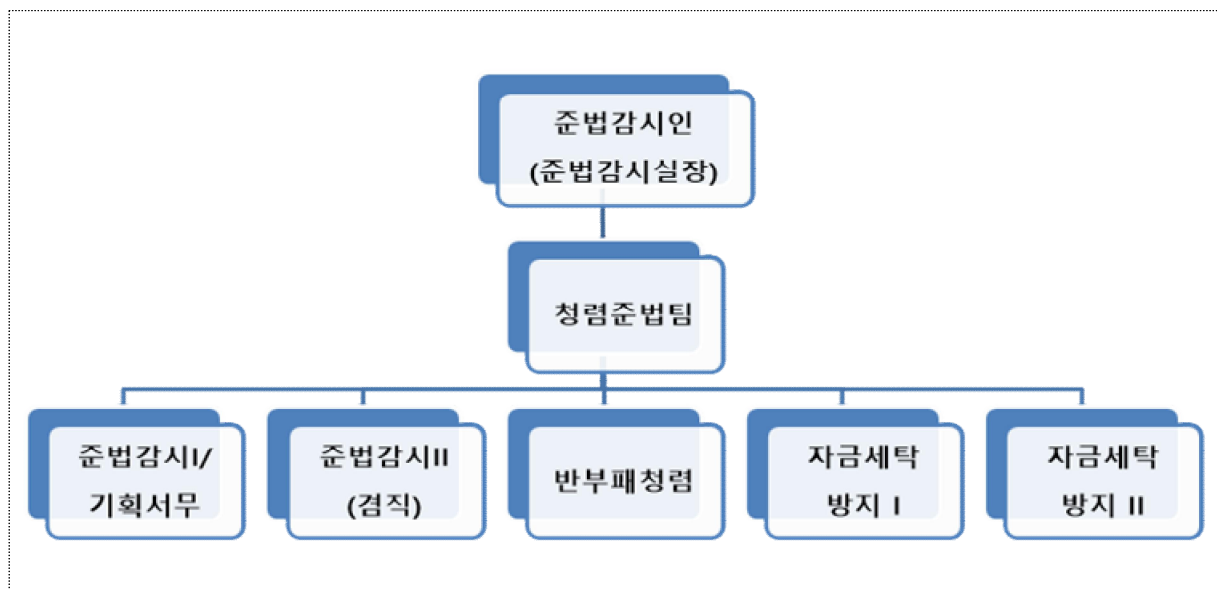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 ----- ----- -----5명-----.
③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중앙회가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으로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으로서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현재 중앙회는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실장 1인을 중심으로 준법감시, 반부패·청렴, 자금세탁방지(AML)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에는 현재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총 10명 내외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¹⁾.

< 수산업협동조합 지배구조도 >



* 자료: 수협중앙회

1) 중앙회 준법감시실의 업무 현황은 [참고 자료] 참조

□ 개정안은 중앙회에 두는 준법감시인 수를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 차원에서 단위수협(91개 회원조합)의 금융사업 등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점검 기능을 보완·강화함으로써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최근 부실우려 수협이 증가하고 단위수협의 건전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선 수협의 사전 부실 예방과 실질적 경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보임.

건전성 우려 수협 현황을 살펴보면, 총 91개 단위수협 중 자기자본비율 2% 미만 수협은 2022년 말 4개에서 2025년 말 19개로 증가하였고, 고정이하여신비율 6% 초과 수협은 같은 기간 2개에서 41개로, 연체율 12% 초과 수협도 0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등 건전성 우려 대상 수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건전성 우려 수협 현황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자기자본비율 2% 미만	4	6	17	19
고정이하여신비율 6% 초과	2	12	39	41
연체율 12% 초과	0	3	6	2

* 자료: 해양수산부

- 또한, 최근 수협·농협·배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36건, 184억 4,5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연도별 사고액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금융사업과 관련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임.

< 수협·농협·배임 사고 발생 현황('20~'25.11월)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1월	합 계
사고건수	7	7	3	4	10	6	36
사고액	2,028	3,438	399	2,778	4,021	5,781	18,445
평균 사고액	290	491	133	695	402	964	512

자료: 해양수산부

- 현행법상 중앙회 준법감시인은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점검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단위수협’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위수협에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호금융업을 수행하는 회원조합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회원조합에 준법감시인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별개의 법인으로서 중앙회가 전국 각지의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경영 판단 등을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회 내 준법감시인 수를 확대하기보다는 회원조합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6)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²⁾.

문 의 처

02)6788-5422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 고

중앙회 준법감시실 업무현황

구 분	직 급	주 요 분 장 업 무
준법감시실장	별 급 1명	• 준법감시실 업무 총괄
팀장	1 급 1명	• 준법감시 및 반부패·자금세탁 업무 세부사항 총괄
서무 기획	2 급 1명 3 급 1명	•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입안 •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미비점 개선·시정 •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및 법규준수와 관련한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등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외부 감독기관 및 본회 감사부서와의 협조·지원 •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개폐 및 관리 • 내부통제 기준 운영을 위한 제반 부수업무 • 준법감시, 법규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준법감시 사전검토(경제, 공제) • 관련법령 조사, 연구, 법률지도 • 기타 회장 및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제규정 제정·개정·폐지(안) 사전 검토 및 조정
반부패 청렴	2 급 1명 3 급 1명	• 내부통제 기준 운영을 위한 제반 부수업무 • 준법감시 사전검토 (일반, 지도, 상호) • 제규정 제정·개정·폐지(안) 사전 검토 및 조정 • 반부패, 청렴정책 업무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업무
자금세탁 방지 (중앙회)	2 급 1명 3 급 1명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제규정 제·개정 및 관리(중앙회)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교육·지도 및 시스템 운용(중앙회)
자금세탁 방지 (회원조합)	2 급 1명 3 급 1명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제규정 제·개정 및 관리(회원조합)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교육·지도 및 시스템 운용(회원조합)

자료: 수협중앙회